

『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관할 구역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,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, “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” 제19조의 규정에 의거, 본 조례를 제정하여, 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**협의회의 기능(안 제2조)**
 -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
 -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
 -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 -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 - 기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- **협의회의 구성(안 제3조)**
 -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은 시장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 -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함.
 -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 -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 - 공익을 대표하는 자
 - 시의회를 대표하는 자
 -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
 - 노동관계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○ 협의회 운영

-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의결시에는 근로자 및 사용자와 시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도록 함(안 제7조).
- 실무협의회를 두어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,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, 협의회 기능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-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0조 제1항).
- 협의회는 필요시 공청회, 세미나의 개최,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 수집이 가능하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조사·연구 의뢰할 수 있음(안 제10조 제2항).

○ 수당 등 지급규정

-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
4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-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
-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

○ 폐지조례 : 구미시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관할 구역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, “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” 제19조의 규정과 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준칙에 의거, 제정하는 조례로서, 우리지역의 산업평화와 노사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,
-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급규정 등 12개조와, 제정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“구미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” 폐지를 명시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,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